

2016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6. 3. 15.(화) ~ 3. 18.(금), 4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4명
- 감사대상 : 2013. 4. 20. ~ 2016. 3월 현재

2 감사결과

구 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 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8	4	24	7/928	2/329	5/599		
원 처 분	13	4	9	7/928	2/329	5/599		혼계 1 주의 2
현지처분	15	-	15	-	-	-		

※ 회수 : 시간외근무명령 및 수당수령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 추징 :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산재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3 지적사항

원 처 분

1. 시간외근무 명령 및 수당수령 부적정(시정)

- 2014년 1월 ~ 2016년 1월까지 지방●◎ ◇급 ◆□■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11,912천원으로 이중 잔무처리는 670시간임.
- 초과근무내역과 다르게 근무한 부당수령액 323천원 회수 조치.

2.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주의)

- 2014. 3월 ●◎◇협의회 회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집행(240천원)
- 2013년 ~ 2015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에 대해 집행일시, 장소, 집행대상 모두 증빙서류에 미기재
- 2014년 ●◎◇◆ 직원 노고 격려 및 업무협조 ●◎◇ 간담회 예산집행 품의서에 집행대상을 미기재(2건/353천원)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 미기재 및 사용 내역 미공개
 - 2015. 6. 25. ●◎◇◆□ 조성업무 추진 직원 격려(600천원)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시정)

- 총 6개 계좌 중 5개 계좌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 ■△계좌 1개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잔액 17,430원)
- 2016. 2. 29.현재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잔액과 예탁금 잔액증명서상 6,000원 부족하게 관리(차액 발생)

4. 2013년도 읍면 종합감사 처분지시사항 처리 소홀(주의)

- ●◎◇◆ 석재공장 뒤 농로포장공사 : 재정상 회수조치 미이행(643천원)
 - ※ 처분요구 전 643천원 징수 완료

5.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시정)

- 2013년 ●◎1리 경로당 개보수 공사 등 3건에 대하여 당초 공사계약기간을 초과(4일)하여 준공처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지 않음.(24,000원)
- 2013년 ~ 2014년 ●◎◇ 유리창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등 6건에 대하여 착공계 및 준공계 등의 서류가 등록(접수)되지 않음.
 - ☞ 당초 계약대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계약의 이행여부 확인 불가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시정)

- 2013년 ●◎◇◆ 주민생활편익사업 외1건 보험료 미정산 : 575,800원

7.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미만) 추진 부적정(주의)

- 2013 ~ 2015년까지 3천만원 미만 사업 23건(242명)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미지정, 사후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비치 등 점검 미이행

8.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 원예) 업무추진 소홀(주의)

- 2015년 지원품목(감자, 고구마, 대두)의 일부 확인사항에 대한 처리 미흡
 - 종자(감자, 고구마, 대두) 매입이나 해당품목의 판매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구매·판매처 확인 미흡)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주의)

- 신규 지급대상자(연령도래, 전입) 이용권 착오지급 : 172명, 911매
 - 연령도래자 소급지급 : 61명, 221매
 - 전입자 지연지급 : 111명, 690매

1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회수 및 폐기업무 추진 소홀(주의)

- 장애인 사망자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미회수 : 22명
 - 2013년 1명, 2014년 9명, 2015년 10명, 2016년 2명

1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관리 소홀(주의)

- 수수료 지연 수납 및 교부 : 201건
 - 쓰레기봉투 55건, 음식물쓰레기철 21건, 대형폐기물스티카 125건

12.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주의)

- 2013년 ~ 2014년 최고 및 직권조치사항 면사무소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홈페이지는 누락, 공고기간 14일 미만 공고함.
 - 홈페이지 공고 누락 : 2013년(2건), 2014년(6건)
 - 공고기간 14일 미만 공고 : 2013년(8일), 2014년(1일~10일)

13.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부적정(주의)

- 청사 출입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 위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일부 미동의
- 전출 및 퇴직자의 개인정보 미파기
- CCTV 영상을 근거없이 30일 이상 보관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 소홀

현 지 처 분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유류(20ℓ, 31,180원)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 (2015. 6. 24.)
- 직원 특근매식비 집행시 정당한 채주(●◎◇◆□■ 대표 ●◎◇)가 아닌 ●◎은행 계좌 ●◎◇에게 집행(2015. 2. 4.)
- 청사 승강기 종합유지보수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점검결과 통보서에 결재누락(전체)한 채 매월 용역료 집행(2014. 1. ~ 감사일 현재까지)
- 신문구독부수 부적정
 - 2013. 4. ~ 2016. 1.까지 ●◎◇◆ 등 22개사에 월 1부 구독료를 집행 하였으나 □■△▲신문은 월 4부씩 구독료 집행

2.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주의)

- 2013. 4. ~ 현재 이장회의참석수당을 정당한 채주(회의참석 이장)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장협의회(총무 ◇◆□) 계좌로 매월 일괄 이체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안내 소홀(주의)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존치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존치기간 만료일, 연장 가능여부 등 내용 미고지 : 82건
-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서 농산물저온저장시설과 이와 유사한 농막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 미이행 : 5건

4.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주의)

- 2013년 하반기(29건), 2014년 상반기(67건) 하자검사 미실시 : 96건

5.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급 소홀(주의)

- 2015년 ●◎◇◆ 배수로 정비공사 등 : 3건/10,000원 과다징수

6. 옥외광고물 등 신고업무 소홀(주의)

- 2014년 ~ 2015년 현수막 신고처리 수수료 미징수 : 4건/18,000원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등재확인 소홀(주의)

- 2013년 ~ 2014년 관외거주자 농지경작사실을 확인하면서 출장 복명없이 회신 : 510건
- 2013년 ~ 2016년 농지원부 등재시 현장확인없이 516건 처리하고, 2014년 200여건은 미접수 처리
 - 2013년 28건, 2014년 미접수 200여건, 2015년 238건, 2016년 50건

8. 조건불리직불금 마을협약 및 공동기금 관리·감독 소홀(주의)

- 관리협약 미체결하였고 사용금액이 1,000천원 미만일 경우 읍면장의 승인 후 공동기금을 지출해야 하나 승인없이 지출하고 증빙서류 및 대장 미관리
- 별도계좌 개설하여 구분·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리의 경우 위원장 개인통장으로 사용(지원대상 : ●◎ 1, ●◎ 2, ◇◆ 1, ◇◆ 2)

9.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주의)

- 2013년 ~ 2015년까지 삼계면 영장로 ●◎◇◆ □■△ 등 100명에게 농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신청시 추가자료 제출여부(직장가입자 원천징수영수증, 교육비미지급확인서 등 미첨부) 및 매분기별 거주사항, 영농규모 등 재확인 없이 94,006천원 지급함.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수불업무 소홀(주의)

- 장애인자동차 표지 수불대장 기록 없이 표지 발급
 - 표지 수령 : 2012년 80매, 2015년 80매
 - 표지 발급 : 56건(2013 ~ 2016. 3월)

11.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주의)

- 2013 ~ 2015년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미실시 : 65가구
 - 2013년 39가구, 2014년 21가구, 2015년 5가구

12. 민원사무 처리 부적정(주의)

- 2013년 ~ 2015년 민원사무처리기한 도과 처리 : 36건
 - 자경증명 발급 민원 : 처리기한 경과(8일) 후 반려처리하면서 내부결재만 득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미통지.

13.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2013. 4. ~ 2016. 3월까지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3일 이내에 관련공부와 함께 신증명청에 이송)
 - 3일 이상 경과 : 933건

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주의)

- 2013년 ~ 2015년 발급대상자에 통지 소홀 : 44명
 - 12개월 신청기간 미부여 : 25명
 - 발급기간 착오 고지 : 19명

15. 인증기용 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주의)

- 2013년 ~ 2015년까지 지연 납입 : 18건 1,072,400원
 - ※ 1일 지연(15건), 2일 지연(1건), 3일 이상 지연(2건)

2016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비 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계		28건	4	24	7/928	2/329	5/599	
1	원 처 분	시간외근무명령 및 수당수령 부적정	○		1/323	1/323		
2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				
3		세입세출외현금 계좌관리 부적정	○		1/6	1/6		
4		2013년도 읍면 종합감사 처분지시사항 처리 소홀		○				
5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		3/24		3/24	
6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		2/575		2/575	
7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		○				
8		FTA피해보전직불(식량,원예) 업무추진 소홀		○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지급 소홀		○				
1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회수 및 폐기업무 추진 소홀		○				
11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관리 소홀		○				
12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		○				
13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부적정		○				
1	현 지 처 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2		이장회의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안내 소홀		○				
4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5		건설공사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발급 소홀		○				
6		옥외광고물 등 신고업무 소홀		○				
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원부 등재확인 소홀		○				
8		조건불리직불금 마을협약 및 공동기금 관리·감독 소홀		○				
9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		○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 수불업무 소홀		○				
11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		○				
12		민원사무 처리 부적정		○				
13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14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				
15		인증기용 증지 수수료 세외수입 납입 소홀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시 정	회 수	323,470	훈 계

제목 : 시간외근무 명령 및 수당수령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0호)에 의하면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지급하며 초과근무의 명령 및 승인 등 절차에 의하되 시간외근무 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 할 수 없다.
- 다만, 현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와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시간 제한없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 또한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 확인,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의 산입 등으로 인한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 따라서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 적발시는 부정수령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수령행위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등 불이익 조치토록 하였다.
- 그런데도 삼계면 ●◎◇급 ◆□■는 2014.2.26.부터 2016.2.까지 ●◎◇◆ □■, △▲, ▽▼,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1.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초과근무확인서와 관계 증빙자료를 대사한 바, [별표] 와 같이 초과근무명령을 득하고 32시간을 초과근무내역(사유)과 다르게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과도하게 잔무처리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부당수령액 323,470원을 회수하기 바랍니다.

[별표]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

(단위 : 시간, 원)

지급연도	초과근무 수당시간	지급 단가	지급액 (원)	초과근무내역 불일치 등		
				●◎근무 실적없음	◇◆검수 근거없음	□■업무 잔무처리
계	1,168		11,912,160	24	8	670
2014.1. ~ 2014.12.	392	9,886	3,875,310	8	8	104
2015.1. ~ 2015.12.	719	10,331	7,427,980	16		520
2016.1.	57	10,682	608,870			46

[처분지시]

근무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초과근무수당 323,470원을 회수하고,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65호)』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따르면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1회 자치단체 내부 행정 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대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삼계면 ●◎◇협의회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공무수행 목적의 단체인 경우는 공공운영비에서 회비를 지출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지급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표1】 과 같이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1】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집행일자	적 요	금액	지적사항
2014. 3. 25.	2014년 삼계면●◎◇협의회 회비	240,000	법령 및 조례근거없음
2014. 5. 13.	●◎◇◆ 직원 노고 격려	200,000	집행대상 미기재
2014. 6. 20.	업무협조 ●◎◇ 간담회	153,000	"
2015. 6. 25.	●◎◇◆□ 조성업무 추진 직원 격려	600,000	-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 미기재 - 사용내역 미공개
2013.~201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	-	일시장소, 집행대상 미기재

[처분지시]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시 정	회 수	6,000	

제목 : 세입세출외현금 계좌 관리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재무회계 규칙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되며, 공공성이 있는 현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계좌이다.

○ 또한, 같은 규칙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제5항에 의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 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자치단체 모든 수입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삼계면사무소 명의로 세입세출외현금계좌 등 6개 계좌를 개설하여, 재배정, 법인카드 결제, 상조회, 민원사무수수료 등 5개 계좌는 정상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삼계농협 000000-00-000000(잔액 17,430원)는 ●◎◇ ◆□■△계좌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다.

○ 또한, 2016. 2.29.현재 세입세출외현금(삼계농협 000000-00-000000) 일계표 잔액은 3,408,090원이며, 예탁금 잔액증명서는 3,402,090원으로 6,000원을 부족하게 관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별도 개설하여 관리중인 ●◎◇ ◆□■△계좌에 대하여 해지처리 및 잔액 제외수입 세입조치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좌의 부족금 6,000원을 제외수입 조치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4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2013년 읍면종합감사 처분지시사항 처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현 황

연번	제 목	처분 사항	처분지시내용	처리결과	완결여부
1	계약업무 추진 소홀	시정	보험료 및 환경보존비 미정산액 등 1,447천원 회수	1,447천원 회수	완 료
2	농로(진입로)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시정	공사감독시 현지 여건과 맞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하지 않고 지급한 사업비 983천원 회수	983천원중 340천원회수, 643천원 미회수	추진중
3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설계도서와 공사현장이 상이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다지급된 사업비 755천원 회수조치	755천원 회수	완 료

【위법·부당사항】

○ 삼계면에서는 지난 2013. 4. 16. ~ 4. 19. (4일간)까지 실시한 『2013년도 삼계면 종합감사』 결과 총 21건의 처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

○ 이에 삼계면장은 관련법규 등의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다시는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특히 처리결과는 처분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과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2016년도 삼계면 종합감사일인 현재까지 『●◎◇◆ 석재공장 뒤 농로포장공사 - (주)●◎◇◆』에 대한 재정상 회수조치 (643천원)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처분지시]

- (주)●◎◇◆로부터 2013 삼계면 종합감사 과다집행 사업비 643,000원을 회수 2016. 4. 4.(월) 납부완료하였다.
- 앞으로는 처분지시 사항 처리결과는 기한내 조치토록 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시 정	추 징	24,000	주 의

제목 :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삼계면에서는 2013. 10. 1. (주)●◎◇◆□■과 『●◎1리 및 ●◎2리 경로당 개보수공사』를 2013. 10. 2. ●◎◇◆(주)과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2013. 10. 22.에 준공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지체상금) 제1항의 규정 의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삼계면에서는 【표1】 과 같이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당초 공사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준공처리하였음에도 【표2】 과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 및 징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삼계면에서는 각종 공사계약 업무처리과정에서 『계약체결 → 착공계 접수/등록 → 준공계 접수/등록 → 준공검사 → 대금청구 → 대금지급』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에도

○ 【표3】 과 같이 “●◎◇ 유리창 햇빛가리개 설치공사 등 6건의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 또는 준공계 등의 서류가 등록(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계약내용대로 공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1】 경로당 개보수 현황

번호	사업명	계약자	계약 공사기간	준공계 접수일	도과일수	비 고
1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주)●◎◇◆□■	2013.10.1. ~ 2013.10.18.	2013.10.22.	4일	
2	●◎2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주)●◎◇◆□■	2013.10.1. ~ 2013.10.18.	2013.10.22.	4일	
3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주)	2013.10.2. ~ 2013.10.18.	2013.10.22.	4일	

【표2】 지체상금 부과액

번호	사업명	계약금액	지체상금율	지체일수	징수금액
계					24,000원
1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2,000,000원	0.001%	4	8,000원
2	●◎2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2,000,000원	0.001%	4	8,000원
3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2,000,000원	0.001%	4	8,000원

※ 계산식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표3】 착공(준공)계 미접수 현황

번호	사업명	계약자	공사기간	착공계 접수일	준공계 접수일	비 고
1	●◎◇◆□■△ 썬팅설치공사	●◎◇◆□■	2014.6.26. ~ 2014.7.7.	-	-	
2	무의탁 독거노인 ●◎◇◆□■사업 (△▲▽)	●◎◇◆□■△▲	2014.3.17. ~ 2014.3.28.	-	-	
3	2014년 농어촌 ●◎◇◆□ 개조사업	(유)●◎	2014.4.16. ~ 2014.5.2.	-	-	
4	●◎◇◆□■△▲ 햇빛가리개설치공사	●◎◇◆□■△(주)	2013.12.9. ~ 2013.12.19.	-	-	
5	●◎◇◆□ 수납시설 제작설치공사	●◎◇◆□■	2013.12.13. ~ 2013.12.20.	-	-	
6	●◎◇◆ 주민생활편익사업	●◎◇◆	2013.11.25. ~ 2013.12.15.	-	-	

[처분지시]

“●◎1리 경로당 개보수공사” 외 2건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하지 않은 24,000원을 회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시 정	추 징	575,800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위법·부당 내역]

□ 현 황

사업명	계약 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자	산정내역(원)			준공계 접수일	보험가입 신 고 일
				산정액	납부액	정산여부		
●◎◇◆ 주민생활편의 사업	2013. 11.22.	4,600	●◎◇◆ □■△	380,000	-	부	-	-
●◎◇◆ 주민생활편의 사업	2013. 11.22.	4,100	●◎◇◆ □■△	195,800	-	부	-	-

○ 삼계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13 ●◎◇◆ 주민생활편의 사업』 외 1건에 대하여 각각 2013. 11. 22.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건설공사 경비분석 및 비목별 요율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이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나,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일로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한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잔액부분은 회수 할 수 없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 그러나 삼계면에서는 준공일 이후 보험가입 및 사업개시 신고서 및 별도정산조치 하지 않은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2013 ●◎◇◆ 주민생활편익사업외 1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575,8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처분지시]

“2013 ●◎◇◆ 주민생활편익사업” 외 1건에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 575,800원을 회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추진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삼계면에서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종사자 등의 소득 증대 및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르면 지원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 등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2013~2015년도에 삼계면 ●◎◇◆□ ■△▲ ▽▼○ 등 242명에게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23건)을 추진하면서, 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후관리 점검 업무를 일부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다.

○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3천만원 미만) 현황

지원연도	사 업 명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2013	FTA기금과수 현대화사업	●◎◇외14	124,808㎡	153,610	73,198	81,233	시설 기타
	특용작물 특성화사업	●◎◇	2,099㎡	2,926	1,284	1,642	시설
	명품사과원조성	●◎◇	3,300㎡	3,500	1,517	,983	시설
	잔디생산장비 지원사업	●◎◇외74	75대	213,408	89,679	123,729	장비
	맞춤형농기계	●◎◇외24	25대	57,400	28,700	28,700	장비
	친환경농기계	●◎◇외2	3대	14,800	10,360	4,440	장비

지원 연도	사 업 명	대상자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 조	자 담	
2013	저온저장고지원	●◎◇외8	9동	64,900	26,815	38,085	시설
	지속가능한 과수육성	●◎◇외1	2대	73,990	20,000	53,990	장비
2014	다목적농기계	●◎◇외21	22대	57,526	28,763	28,763	장비
	친환경농기계	●◎◇외2	3대	6,700	4,690	2,010	장비
	저온저장고지원	●◎◇외7	8동	57,200	24,542	32,658	시설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외3	4대	15,865	12,510	3,354	시설
	지속가능한 과수육성	●◎◇외1	SS기1대	29,214	16,299	12,915	장비
2015	원예특작지원	●◎◇외10	5공/2대/ 12,334㎡	148,210	58,667	89,533	시설 장비
	과수전정전동 가위지원	●◎◇외3	4대	13,000	6,000	7,000	장비
	친환경채소단 지육성	●◎◇외7	8공	21,000	10,500	10,500	시설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	330㎡	7,387	3,105	4,282	시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	1대/2,800㎡	2,900	1,160	1,740	장비
	임산물생산장 비지원	●◎◇외2	3대	9,600	3,840	5,760	장비
	친환경기계	●◎◇외2	3대	5,600	3,920	1,680	장비
	다목적농기계	●◎◇외27	28대	59,440	29,720	29,720	장비
	저온저장고지원	●◎◇외6	7동	49,000	22,270	26,730	시설
	지속가능한과 수육성	●◎◇외4	3대	98,400	30,000	68,400	장비

[처분지시]

앞으로는 3천만원 미만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 원예) 업무추진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삼계면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피해를 보전하고 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읍면장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 추진시 생산지확인서, 전년판매(구매)기록 등 서류를 필히 징구토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지조사 종료후 15일 이내에 신청자의 지급신청 내용의 사실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피해보전직불 업무를 추진하면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누락하는 등 소홀히 추진한 사실이 있다.
- FTA 피해보전직불사업 추진 누락사항(2014~2015년)

분 야	내 용
공통사항 (식량,원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사항 항목별 확인, 날인【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 면적, 생산년도, 이상유무, 주요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기재)하고 담당자 날인 □ 심사위원회 개최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신청자의 지급신청 내용의 사실여부 심사 : 구성 7명이내, 임기2년 (쌀직불제 등의 심사위원회 활용 가능)

[처분지시]

앞으로는 FTA 피해보전직불제(식량, 원예)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삼계면에서는 의료복지혜택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원기준으로 65세 나이에 이르는 다음달부터 지급하고, 전입자가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달부터 지급하며,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이용권 지급 시기가 맞지 않아 이용권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용권 지급대상 연령 미도래자 61명에게 연령도래 다음달 1개월~6개월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였고, 전입자 111명에 대하여는 전입월 다음달로부터 1개월~9개월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였음.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소급 및 지연 지급 현황

(단위 : 명, 매)

구 분	연도별	인원	수량	비 고
연령도래	소계	61	221	
	2013	20	66	1월~6월 소급 및 지연
	2014	33	98	1월~4월 소급 및 지연
	2015	8	57	1월~3월 소급
전 입	소계	111	690	
	2013	38	248	1월~9월 지연
	2014	51	247	1월~4월 지연
	2015	22	195	1월 지연 및 소급

[처분지시]

앞으로는 목욕비 및 이·미용권 지급시 관련규정에 따른 지급시기 및 대상을 명확히 준수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회수 및 폐기업무 추진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애인복지사업 안내(1)』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자 중 사망, 해외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회수하여 폐기해야 하며
- 장애인등록 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등 유효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등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일 2주전 까지 장애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등록 장애인 중 사망자에 대하여 실제 사망일의 다음날로 장애등록을 취소하고 부당 사용이 없도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회수 후 폐기해야 함에도 회수하지 않는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장애인 사망자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회수 및 폐기 현황

연도별	장애인 사망자 수	회수및 폐기	미 회수	비고
계	29	7	22	
2013	2	1	1	
2014	13	4	9	
2015	12	2	10	
2016	2	-	2	

[처분지시]

앞으로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회수 및 폐기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관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대형 폐기물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읍면사무소에서 스티카 구입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판매인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읍·면사무소에서 매수해야 하며, 읍·면장은 주문에 의해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불입토록 조치하고 영수증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삼계면에서는 2013년부터 2016년 3월까지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짚, 대형폐기물 스티카 반출시 수수료 납입 후 교부하여야 하나 납부 영수증을 확인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카를 교부하였음.

○ 쓰레기처리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지연납현황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계		697	201	
쓰레기봉투	2013	29	13	1일~13일
	2014	31	15	1일~54일
	2015	33	23	1일~20일
	2016	9	4	1일~12일
음식물쓰레기짚	2013	14	2	1일~14일
	2014	19	8	1일~15일
	2015	12	9	1일~21일
	2016	3	2	1일~15일

종별	연도별	수납건수	지연건수	지연일수
대형 폐기물스티카	2013	174	93	1일~10일
	2014	202	24	1일~7일
	2015	141	6	1일~5일
	2016	30	2	1일

[처분지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수료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일 내에 납부하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

[위법·부당 내역]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불일치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사실조사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자는 최고·공고(면사무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하며 최고나 공고를 하여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조치를 하고 직권조치사항을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표1】 과 같이 2013년 ~ 2014년도까지 무단 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절차를 처리하면서 최고사항과 직권조치사항을 면사무소 게시판에만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공고기간을 8일만 공고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있다.

【표1】 주민등록 일제조사 소홀 사항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소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및 직권조치 사항 공고 시 홈페이지 공고 누락 : 2건 · 최고 및 직권조치사항 공고기간 14일 미만 공고 : 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및 직권조치 사항 공고 시 홈페이지 공고 누락 : 6건 · 최고 및 직권조치사항 공고기간 14일 미만 공고 : 1일~10일

[처분지시]

앞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지 시 서

NO. 1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삼계면	2013 ~ 2016	주 의			

제목 : 면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부적정

[위법·부당 내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같은 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처리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삼계면에서는 청사 출입을 위한 무인경비시스템 지문인식을 위해 공무원의 지문과 주민등록을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출 및 퇴직 등으로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처리하지 않아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유한 사실이 있다.

○ CCTV 영상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5조(보관 및 파기) 제2항에 따르면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고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반영하고 보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삼계면은 근거 없이 CCTV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한 사실이 있다.

[처분지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절차 등을 이행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